



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표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판단되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출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6.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